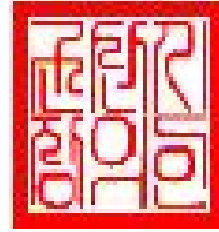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조례 제2034호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금액<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6월이내,”를 “1년 이내,”로, “6월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경유하는”을 “경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군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나 상해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후단 신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1. ----- ----- ----- ----- 금액</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p> <p>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u>6월이내</u>,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u>6월이내에</u>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u>경유하는</u>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1년 이내</u>, ----- ----- ----- <u>1년 이내에</u> ----- ----- ----- <u>경유</u>, ----- ----- ----- . <u>다만,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군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u></p> <p>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 . <u>다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 -----</p>

현 행	개 정 안
<p>의하기 위하여 <u>군산시의회의원상 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u>를 둔다.</p> <p>②·③ (생략)</p>	<p>----- <u>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 심의회</u>-----.</p> <p>②·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조례 제2035호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수거·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9.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조례 제2036호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구축 및 관련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군산시가 설치하는**” 을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소재지 :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제14조제1항 중 “**6인 이상 9인 이하**” 를 “**10인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업무담당국장과 광역지자체의 사업 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과 제2항 제1호에서 제2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17조의2 규정에 <u>의하여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구축 및 관련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군산시가 설치하는 군산물류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따라</u> <u>중소 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u> ----- ----- ----- -----.</p>
<p>제3조(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물류 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소재지 :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u></p>	<p>제3조(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소재지 :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오식도동)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u></p>
<p>제14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물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u>6인 이상 9인 이하</u>의 위원으로 물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p>	<p>제14조(운영위원회) ①----- ----- ----- <u>10인 이내</u>----- ----- -----.</p>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항만혁신국장과 시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관련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p> <p><신 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업무담당국장과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p>③ 당연직 위원과 제2항 제1호에</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④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u>유통구조 개선으로 중소기업체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2. (생 략)</p> <p>3. <u>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u>서 제2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p> <p>1. <u>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u></p> <p>2. <u>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3. <u>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u></p> <p>5. <u>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u></p> <p>⑥ <u>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⑦ <u>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조례 제2037호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단, 신규 지정시 기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과 지역 또는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최대 3개소까지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조례 제2038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예탁 및 자금의 전출) ①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금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제9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10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1. 징수관·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2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10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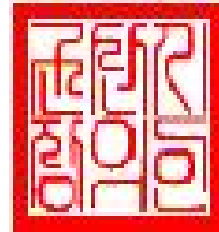
구 분	산 식	비고
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비고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0.4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조례 제2039호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시설”이란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의 대강당, 교육실 등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산시장**” 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교육장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이용시설의 사용료**” 를 “**이용시설의 사용료**”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제한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영리목적
3.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단체별 월1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기술교육에 한하여 월1회**” 를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교육장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수강료의 잔액을 반환
2. 이용자가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3. 이용자가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남은 수강일 수의 수강료를 반환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강사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수강 과목이 폐지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제2항 중 “지도 감독” 을 “지도·감독”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탁관리의 제한)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조례 및 관계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제4조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평일	주간	1회(2시간)	15,000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1:00 ○ 추가 이용 시 기준사용료의 20% 징수(매시간) ○ 추가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야간	1회(2시간)	18,000	
	공휴일	주간	1회(2시간)	18,000	
		야간	1회(2시간)	21,000	
교육실	평일	주간	1회(1시간)	10,000	
	공휴일	주간	1회(1시간)	12,000	

※ 공휴일 :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2. 냉·난방 사용료

시설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1회(2시간)	35,000	○ 추가 이용 시 기준사용료의 20% 징수(매시간) ○ 추가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3. 여성사회대학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원)	비 고
수강료	1시간	1,000	○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이용시설 이라 함은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 이라 한다)의 회의실 교육실등과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이용자 라 함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p> <p>4. 사용료 라 함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 라 함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이용시설” 이란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 이라 한다)의 대강당, 교육실 등과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이용자” 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p> <p>4. “사용료” 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 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3조(사용허가)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 -----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여성교육장 <u>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u></p> <p>② (생 략)</p> <p><u><신 설></u></p>	<p><u>② 여성교육장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u></p> <p>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u>이용시설의 사용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제한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u> 2. <u>영리목적</u> 3. <u>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u> 4. <u>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u> 5. <u>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u>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료 감면) 국가 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p> <p>②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단체 별 월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③요보호 대상자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제6조(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교육에 한하여 월1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요보호 대상자</p> <p>2. 기타 시장이 감면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5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p> <p>2.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단체 별 월1회</p> <p>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p> <p>제6조(수강료 감면) ----- ----- 경우에는 -----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p> <p>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p> <p>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수강생(사용자)이 납부한 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강(사용) 개시 전 또는 여성 교육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사용)료 전액 환불</u> <u>2. 수강(사용) 개시 후 수강생(사용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사용)료 일할계산 후 환불</u> <p><u>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u></p>	<p><u>자</u></p> <p><u>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u></p> <p><u>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u></p> <p><u>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교육장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 수강료의 잔액을 반환</u> <u>2. 이용자가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 ·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용료 ·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u> <u>3. 이용자가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남은 수강일 수의 수강료를 반환</u> <p><u>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④ <u>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 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8조의2(강사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u> <u>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u> <u>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u> <u>4.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u> <u>5. 수강 과목이 폐지된 경우</u> <u>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u>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탁관리) ① (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u>지도 감독</u>을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9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도 · 감독</u>-----.</p> <p>③ <u>위탁관리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9조의2(위탁관리의 제한)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 ·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u></p> <p><u>1. 조례 및 관계 규칙을 위반했을 때</u></p> <p><u>2.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u></p>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1항 관련)				[별 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제4조1항 관련)					
요일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시설사용료					
1.회의실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가.평일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대강당	평 일	주간 1회(2시간)	15,000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1:00 ○ 추가 이용 시 기준사용료의 20% 징수(매시간) ○ 추가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1)주간	1회	15,000원				야간 1회(2시간)	18,000		
2)야간	1회	18,000원			공 휴 일	주간 1회(2시간)	18,000		
나.휴일						야간 1회(2시간)	21,000		
1)주간	1회	18,000원		교육실	평 일	주간 1회(1시간)	10,000		
2)야간	1회	21,000원				공 휴 일	주간 1회(1시간)		12,000
다.예식장	1회	30,000원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2.교육실					2. 냉·난방 사용료				
가.평일	1회	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나.휴일	1회	12,000원			○ 월 8시간 기준 (1회2시간)	대강당	1회(2시간)		35,000
3.수강료			3. 여성사회대학 수강료						
가.정서 및 취미교육	1인 1개월	5,000원	○월8시간 기준 (1회 2시간)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나.기술교육	1인 1개월	5,000원		수강료	1시간	1,000	○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별도		
4.부속시설									
냉난방시설 (회의실사용시)	1회 2시간	35,000원	○1시간 초과시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의회 규칙 제799호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의정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정활동 관련 여론 조사 및 수집
3. 사무국 인사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7. 의원 역량개발(공공위탁, 민간위탁)
8.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회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의사운영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및 지원
2. 각종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
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연구
5.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6.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총괄
7. 의회사 편찬
8. 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회기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회 운영에 따른 법규 제정 및 개정 사항
11.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과 의회 방송기기 조작 관리
12.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대외협력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및 각종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의장단협의체 운영 관리
3.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
4. 국제·국내 교류 기본계획 수립
5. 국제·국내도시 상호 결연 등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군산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

④홍보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정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
4. 시민기자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 전산화 사업 및 관리
7.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
8. 기타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⑤정책지원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5분발언 및 시정질문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응답의 지원
5. 법제동향·제도 등 의회 정책자료 조사 분석
6. 의원 서류제출 요구 지원
7. 주요사업 심사분석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 검토
8.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 추계 분석
9. 예산 회계별 추이 분석 및 과년도 사업 평가 검토 등

⑥시민봉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민원업무 처리
2. 진정·건의 등 전화·방문 상담 민원
3. 의장에게 바란다 운영 및 관리
4. 의원 정책개발(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5. 의정관련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 접수 및 처리 등

⑦의회관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 2. 의안 문서의 보존 관리
- 3. 각종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회의 녹취록 작성
- 4.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5.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 3. 위원회에서 의결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규칙 제800호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로 한다.

제2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自宅)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5조제2항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제9조제3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차량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시장은 채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事由)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제2항제2호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군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u> 」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 제8조----- -----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읍·면·동(이하 “ <u>소속기관</u> ”이라 한다)으----- ----- -----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략)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u>별표와 같다</u> .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u>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u> .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1과</u> ----- ----- -----
④ (생략) <u><신 설></u>	제2장 당직근무 ③ <u>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u>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u>별표</u>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p>	<p><u>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u></p> <p>1. <u>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u></p> <p>2. <u>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u></p> <p>3. <u>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u></p> <p>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별표 2</u>----- ----- . -----</p>

현 행	개 정 안
<p>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⑤ (생략)</p> <p>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조제목 변경 2020.12.28.> 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당직실의 비품) ① (생략)</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차량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시장은 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당직실의 비품) ① (현행과</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산(새울행정시스템)으로 작성한다.</p> <p>③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p> <p>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p> <p>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p> <p>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p> <p>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p> <p>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p> <p>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p>	<p>같음)</p> <p>② 제1항제1호----- -----.</p> <p>③ 제1항제3호-----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비상근무</p> <p>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p> <p>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p> <p>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p> <p>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p>

현행	개정안
<p><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u>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u></p> <p><u>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u></p> <p><u>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u></p> <p><u>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u>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u></p> <p><u>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u></p> <p><u>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u></p>	<p><u>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u></p> <p><u>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u></p> <p><u>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u>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u></p> <p><u>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u></p> <p><u>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u>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u></p> <p><u>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u></p>

현 행	개 정 안
<p><u>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2. <u>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가. <u>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u></p> <p>3. <u>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가. <u>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u></p> <p>4. <u>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25조(비상소집) ① (생략)</p> <p>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p>	<p>제25조(비상소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p> <p>1. (생 략)</p> <p>2. <u>사업소</u>, 읍·면·동은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p> <p>③ ~ ⑤ (생 략)</p> <p><u><신 설></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직속기관·사업소</u>-----</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u></p>

[별표 1]

당직근무자의 편성

		숙 직	일 직 (토요일, 공휴일)
시본청	당 직 사 령	1명 - 6급 상당 공무원	1명 - 5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
	당 직 원	2명 - 6급 이하 무보직 공무원	2명 - 6급 이하 무보직 공무원
직속기관 · 사 업 소	당 직 원	1명이상 또는 무인당직근무	
읍·면·동주민센터		채택당직근무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규칙 제801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을 “주민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직권으로 임명하거나 면접절차”를 “면접 등의 절차”로 한다.

② 규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거주기간을 예외로 한다.

- 1. 신설된 리·통의 경우
- 2.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에서 리·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u></p> <p><u>② 공개모집 지원자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10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u></p> <p>③ 공개모집 지원자가 1인인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고, 2인 이상인 경우 읍·면·동장이 <u>직권으로 임명하거나 면접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u>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 ----- ----- <u>주민중</u> ----- ----- ----- ----- ----- -----.</p> <p><u>② 규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거주기간을 예외로 한다.</u></p> <p>1. <u>신설된 리·통의 경우</u></p> <p>2. <u>공개모집 지원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u></p> <p>③ ----- ----- ----- <u>면접</u> ----- <u>등의 절차</u>----- ----- -----.</p>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규칙 제802호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을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이하 여성교육장 이라 한다)**” 을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설)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 이라 한다)**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2조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을 “**여성교육장**” 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을 제출하여 **여성가족과장**” 을 “**“별지 제1호서식”** 을 제출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 청소년과장은 제1항**” 을 “**제1항**” 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의 이면의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하여” 를 “ “별지 제2호서식” 으로” 로 한다.

제5조 중 “여성가족과장” 을 “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여 성 교 육 장 사 용 허 가 서

사 용 자		사용장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u></p>	<p><u>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이하 여성교육장 이라 한다)</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여성교육장 이용시설</u>----- ----- -----.</p>
<p>제2조(시설) <u>여성교육장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례교실</u> 2. <u>취미교실</u> 3. <u>예 법 실</u> 4. <u>강 당</u> 5. <u>기술교실</u> 6. <u>상 담 실</u> 7. <u>사 무 실</u> 8. <u>기타시설</u> 	<p>제2조(시설) <u>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 이라 한다)</u>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p> <p><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p>
<p>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u>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자</u></p>	<p>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u>여성교육장</u>-----</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자는 “<u>별지 제1호 서식</u>” 을 제출하여 <u>여성가족과장</u>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p> <p>② <u>가족청소년과장</u>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이 되면 “<u>별지 제2호 서식</u>” 의 이면의 허가조건을 <u>부관</u>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보고) <u>여성가족과장</u>은 매분기 사업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u>별지 제1호서식</u>” 을 제출하여 <u>군산시장</u>(이하 “<u>시장</u>” 이라 한다)-----.</p> <p>② <u>제1항</u>----- ----- “<u>별지 제2호 서식</u>” 으로 -----.</p> <p>제5조(보고) <u>업무담당 부서장</u>----- ----- -----.</p>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안																																												
<p>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p>		<p>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성 교 육 장 사 용 신 청 서 (제3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사 용 목 적</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사 용 자</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사 용 기 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시부터</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시까지</td> <td></td> </tr> <tr> <td>사 용 장 소</td> <td></td> <td>참가대 상인원</td> <td></td> </tr> </table> <p>위와 같이 군산시 가족청소년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귀 여성교육장을 사용코자 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군 산 시 장 귀하</p>		사 용 목 적		사 용 자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		참가대 상인원		<p style="text-align: center;">여 성 교 육 장 사 용 신 청 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사 용 자</td> <td style="width: 25%;">성명(단체)</td> <td style="width: 25%;">전화 번호</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td> <td>주 소</td> <td></td> <td></td> </tr> <tr> <td>사용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시 부터</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시 까지</td> <td></td> </tr> <tr> <td>사용장소</td> <td></td> <td>냉난방사용</td> <td>사용 / 미사용</td> </tr> <tr> <td>사용목적</td> <td></td> <td>참석인원</td> <td>명</td> </tr> <tr> <td>첨부서류</td> <td colspan="3">행사계획서</td> </tr> </table> <p>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 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인)</p> <p style="text-align: right;">군 산 시 장 귀하</p>			사 용 자	성명(단체)	전화 번호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장소		냉난방사용	사용 / 미사용	사용목적		참석인원	명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사 용 목 적		사 용 자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		참가대 상인원																																														
사 용 자	성명(단체)	전화 번호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장소		냉난방사용	사용 / 미사용																																													
사용목적		참석인원	명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여성 교육장 사용허가서

(제3조제2항관련)

사 용 기 간	년월일시부터	사 용 장 소
	년월일시까지	사 용 자

위와 같이 군산시 가족청소년과 여성 교육장 이용시설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이면)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별표

가족청소년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1항 관련)

여성 교육장 사용허가서

사 용 자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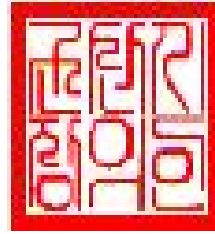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표 삭제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1일

군산시 규칙 제803호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로컬푸드 중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로컬푸드 인증관련 담당 및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
3. 시민단체 대표
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
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인증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신고증
3.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 ①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업체 지원)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
2. 인증마크 사용
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4.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응시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심사기준(제8조 관련)

1.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100점 만점)	심사기준
로컬푸드 사용량	50점	- 주재료의 로컬푸드 사용량(30점) - 부재료 및 양념류의 로컬푸드 사용량(20점)
맛	20점	- 취식 만족도(10점) - 조리상태 및 음식재료의 품질수준(10점)
위생	20점	- 식재료 위생 관리 상태(10점) - 조리도구 위생상태(5점) - 영업장 실내외 위생상태(5점)
서비스 만족도	10점	- 영업주 및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5점) - 음식메뉴에 대한 지식(3점) - 가격 적절성(2점)
가점	5점	- 2대 이상 대물림 또는 사업주 변경 없이 20년 이상 영업(1점) - 요리전문가(조리사, 영양사) 고용여부(1점) - TV 및 언론기관 등에서 정하는 맛집 선정여부(1점) - 음식업 관련 국가 및 시군 인증여부(1점) - 지역사회 공헌도(봉사활동, 기부, 푸드뱅크 참여 등)(1점)

- 로컬푸드의 사용량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세부 표기사항을 표기한다.

〈인증 받은 업체의 인증 세부표기 사항〉

단 계	평가 항목	인증 표시	세부표기사항
1단계	로컬푸드 50%이상 60%미만		1단계 
2단계	로컬푸드 60%이상 70%미만		2단계 
3단계	로컬푸드 70%이상		3단계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5조제2항 관련)**인증번호 부여방법****【 인증번호 부여방법】**

제 ○○ - ○○ - ○○○ - ○ 호

제 (인증연도) - (품목별 분류번호) - (인증 일련번호) - (인증단계)

※ 부여방법 설명

- 인증연도는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의 뒷자리 두자리를 표기한다.
예) 2022년도에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22로 표기
- 품목별 분류번호는 아래와 같다.
- 인증 일련번호는 연도와 상관없이 인증순서에 의한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품목별 분류번호》

품 목	분류번호	품 목	분류번호
향토음식(흰찰쌀보리)	01	뷔페	09
향토음식(장아찌류)	02	패스트푸드	10
향토음식(박대, 계장)	03	고기요리	11
한식	04	닭/오리요리	12
중식	05	별식/퓨전요리	13
일식	06	디저트/커피/음료	14
양식	07	기타	15
분식	08		

[별지 제2호서식]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

1. 인증번호 : 제 22-01-0001-1 호
2. 성 명 :
3. 업 소 명 :
4. 영업신고번호 :
5. 영업 소재지 :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단계 인증업소로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3 - 210호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및 「2023년 의사상자 예우 수당 사업안내서」 의거 조례 일부 내용 수정필요

2. 주요내용

-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로 일부 구문 삭제(안 제4조)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1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kmin1125@korea.kr
- 팩 스 : 063-454-6024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전화 063-454-3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별표1 지급기준은 2023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별표1]

수당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별표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u></p> <p>④ 수당의 지급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u>인정한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가시 지급이 중단되며, 자녀인 경우에는 만20세 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u></p>	<p>제4조(지원사업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 . <단서 삭제></p> <p><삭 제></p>																		
<p>[별표1] 수당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사자의 유족</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 ~ 2급 의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 ~ 6급 의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r> </tbody> </table> <p>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한다.</p>	구분	월지급액	의사자의 유족	50,000원	1급 ~ 2급 의상자	50,000원	3급 ~ 6급 의상자	30,000원	<p>[별표1] 수당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사자의 유족</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 ~ 2급 의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 ~ 6급 의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급 ~ 9급 의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body> </table> <p>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한다.</p>	구분	월지급액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구분	월지급액																		
의사자의 유족	50,000원																		
1급 ~ 2급 의상자	50,000원																		
3급 ~ 6급 의상자	30,000원																		
구분	월지급액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사업 등)

-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2.11.11) 및 지침에 따른 변경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라북도 2023년 의사상자 예우수당 신설로 인하여 수당 지급액 증가 예상

- 의사자의 유족 : 월 5만원 ➡ 월 10만원(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 1 ~ 2급 의상자 : 월 5만원 ➡ 월 8만원(도비 4만원, 시비 4만원)

- 3 ~ 6급 의상자 : 월 3만원 ➡ 월 6만원(도비 3만원, 시비 3만원)

- 7 ~ 9급 의상자 : 월 0원 ➡ 월 4만원(도비 2만원, 시비 2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 4,680,000원

○ 의사자의 유족(대상 증가)

- (기존) 5명 × 12개월 × 50,000원 = 3,000,000원(도비 3,000천원)

- (추가) 1명 × 12개월 × 100,000원 = 1,200,000원(도시 600천원, 시비 600천원)

○ 1~2급 의상자 : (기존) 0명 × 12개월 × 80,000원 = 0원

○ 3~6급 의상자 : (기존) 0명 × 12개월 × 60,000원 = 0원

○ 7~9급 의상자(대상 증가)

- (추가) 1명 × 12개월 × 40,000원 = 480,000원(도비 240천원, 시비24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및 시비 지원(2023년 추경예산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연락처	(063) 454-30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세 출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의사상자 수당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재원 조달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자체 수입	소 계	840	840	840	840	840	4,200
	지방세	840	840	840	840	840	4,2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3,840	3,840	3,840	3,840	3,840	19,200
	도비 보조금	3,840	3,840	3,840	3,840	3,840	19,2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							

군산시 공고 제2023-214 호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의 목적인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①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②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③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기능 중복으로 존속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입법 예고 기간 : 2023. 2. 1. ~ 2. 21. [20일간]

4. 의견제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063-454-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1)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3층 관광진흥과
- (2) 전화 : (063)454-3332
- (3) 팩스 : (063)454-6020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 kimnh@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현행 조례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폐지				

붙임 2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안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현 행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2007.10.30 조례 제767호

(일부개정) 2014.12.16 조례 제1159호 타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1229호

(일부개정)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동네의 개념으로 통·리·반을 의미한다.
2. "살기좋은 마을"이란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정주수요를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지역을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란 시 관내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

· 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본 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 2. 마을 만들기는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
-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며 또한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제7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은 시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7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삭제 2015.04.30>
4. <삭제 2015.04.30>
5. <삭제 2015.04.30>
6.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7.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10조(사업신청) ①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업이 2개 이상의 읍면동 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후 관할 읍면동장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가 지원)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조정) 시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주체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형성 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혜택을 교부받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3장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제19조(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4.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문화관광국장, 행정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산림녹지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농촌지원과장 등<개정 2015.04.30, 2017.01.02, 2019.12.24.>

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4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8.03>

②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3>까지 생략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18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 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5.04.3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⑤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복지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어린이행복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3-215호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의 목적인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①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②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③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기능 중복으로 존속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3. 폐지 규칙안 : 붙임

4. 입법 예고 기간 : 2023. 2. 1. ~ 2023. 2. 21.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063-454-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1)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3층 관광진흥과
- (2) 전화 : (063)454-3332
- (3) 팩스 : (063)454-6020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 kimnh@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현행 규칙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폐지				

붙임 2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현 행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10.30 규칙 제3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조례 제7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

②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만들기 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제3조(사업신청) ①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사업심의 등) ①시장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 만들

기 사업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신청을 요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부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한다.

②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정기회) 조례 제24조 규정의 정기회는 연중 하반기에 1회 개최한다.

제8조(기록유지) 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 칙(2007.10.30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3-225호

공 고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 직속 위원회로 구성하고, 회의운영 및 안전 사항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에 관한 사항(제10조제2항)
-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제13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전화 : 063-454-4382, FAX : 063-454-601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계(☎063-454-4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화상회의 포함),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에서는 제9조제2항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 ③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청련”을 “청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시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장</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생략)</p>	<p>제12조 (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3조 (회의 등)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u></p>	<p>제13조 (회의 등) ① <u>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화상회의 포함),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u></p>
<p><신 설></p>	<p>② <u>회의에서는 제9조제2항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u></p>
<p><신 설></p>	<p>③ <u>사안이 경미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5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u>청년</u>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u>군산 청년협의체</u>(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 <u>청년</u> -----</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고시 제2023 - 7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20.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7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3. 1.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84-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길 4 (수송동)	20230113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 등리 1026-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 천로 844-57	20230113		20090709	도로 옆으로 탑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224 (조촌동)		20230113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금강장례 식장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 교리 1114-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하 광1길 64	20230110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접 산리 93-3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야 중길 25	20230111		20100125	접산리 야중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3-1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8길 15 (미장동)	20230110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 수리 2093-7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임 피중길 65	20230106		20100125	서수리 임피중학교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 광리 546-12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원 당1길 12	20230106		20110728	고유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 제리 10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 레기길 23	20230106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84-18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38-1 (문화동)	2023010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 곡리 67-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간 치말1길 106	20230105		20070528	옛 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38-1 (문화동)		2023010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과일마트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 제리 98-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대 학로 808	20230112		20100125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11-22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238 (해망동)	2023010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26	20230111		20100125	군산시법원을 관통하는 도로	

부여	226-2	(조촌동)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 산리 36-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 르메길 91	20230110		20120925	발산의 옛 이름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679-5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54 (소룡동)	20230106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 은리 783-1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 은동로 304-21	20230105	건물신축	20100125	옥구읍 어은리를 통과하는 도로로 리명칭 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61-5	전라북도 군산시 원당길 38 (미룡동)	2023010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3 - 1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갯벌연구센터 및 대로 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내흥동 90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갯벌연구센터 및 대로 1-4호선)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내흥동 903번지 외 1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 사업
 - 나. 명 칭 : 갯벌연구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갯벌연구센터 : 대지면적 A=11,161.79㎡, 건축면적 1,703.59㎡
 - 나. 대로 1-4호선 : A=318㎡ (가감속차로 설치)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일련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금회시행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2,344.0	22,194.0	11,161.79	-	-	-	-	-	
1	군산시 내흥동	894	12	하천	44.0	3.0	3.0	농림수산부	-	-	-	-	진입 도로
2	군산시 내흥동	894	8	하천	5,785.0	91.0	91.0	농림수산부	-	-	-	-	진입 도로
3	군산시 내흥동	903	-	잡종지	36,515.0	22,100.0	11,067.79	해양수산부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금회시행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147.0	318.0	318.0	-	-	-	-	-	
1	군산시 내흥동	894	13	하천	128.0	39.0	39.0	농림수산부	-	-	-	-	
2	군산시 내흥동	894	12	하천	44.0	38.0	38.0	농림수산부	-	-	-	-	
3	군산시 내흥동	894	8	하천	5,785.0	96.0	96.0	농림수산부	-	-	-	-	
4	군산시 내흥동	336	-	전	225.0	38.0	38.0	군산시	-	-	-	-	
5	군산시 내흥동	338	1	임	648.0	3.0	3.0	군산시	-	-	-	-	
6	군산시 내흥동	332	52	대	35.0	32.0	32.0	군산시	-	-	-	-	
7	군산시 내흥동	332	40	도	2.0	2.0	2.0	국토교통부	-	-	-	-	
8	군산시 내흥동	332	68	도	3.0	3.0	3.0	이점영외6인	-	이*영	대전시 중구 관저동	21분의 6	
										박*례	군산시 내흥동	21분의 2	
										이*덕	김제군 흥남면 월성리	21분의 1	
										이**마	김제군 공덕면	21분의 2	
										이*례	군산시 구암동	21분의 2	
										이*부	군산시 내흥동	21분의 4	
										이*호	군산시 내흥동	21분의 4	
9	군산시 내흥동	332	41	대	9.0	9.0	9.0	군산시	-	-	-	-	
10	군산시 내흥동	894	35	하천	25.0	25.0	25.0	농림수산부	-	-	-	-	
11	군산시 내흥동	894	11	하천	61.0	32.0	32.0	농림수산부	-	-	-	-	
12	군산시 내흥동	338	7	전	182.0	1.0	1.0	군산시	-	-	-	-	

군산시 고시 제2023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3차)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미룡동 92-1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변경승인 내용 반영)
 - 가-1. 명 칭 : (주)유탑디앤씨
 - 가-2. 대 표 자 : 정병동
 - 가-3.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
 - 나-1. 명 칭 : (주)유탑건설
 - 나-2. 대 표 자 : 정성욱
 - 나-3.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8월 11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일 : 2023년 1월 18일
-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변경승인 내용 반영)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92-13번지 외 25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17,472m²

- 라. 건축면적 : 3,652.7905m²(건폐율 : 20.91%)
 마. 연 면 적 : 63,456.0095m² (용적율 : 248.80%)
 바.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3층 /아파트 4개동 외, 378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공급방식 : 분양전환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378				
84A	민영주택	180	84.7184	28.4431	113.1615	
84B	민영주택	123	84.5952	28.3938	112.9890	
84C	민영주택	75	84.9837	30.5290	115.5127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95,199,685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1월 30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군산시 고시 제2022-217호(2022.12.16.)와 동일

7.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3 - 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경장동 51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유한회사 군산마루힐
 - 나. 대 표 자 : 강희정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A동 1410호(오룡동)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3년 1월 20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18-1 외 28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임대)
 - 다. 대지면적 : 7,997m²
 - 라. 건축면적 : 6,486.0567m²(건폐율 : 81.11%)
 - 마. 연 면 적 : 96,867.5040m² (용적율 : 841.44%)
 - 바. 건축규모 :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3개동 외, 508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800				
84A	민영주택	254	84.9941	41.1809	126.1750	임대
84B	민영주택	135	84.9775	40.7152	125.6927	임대
84C	민영주택	45	84.9861	39.4409	124.4270	임대
84D	민영주택	74	84.9710	39.3624	124.3334	임대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105,198,713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같음

6.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3-17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군 산 시 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은파현대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군산시 현충로 33 (나운동)	은파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전등급 B등급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 필요	전체동
대명4차아파트	군산시 나운동로 70 (나운동)	대명4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전등급 B등급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 필요	전체동
동아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 107동	군산시 동아로 160 (소룡동)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전등급 B등급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 필요	전체동
금광삼성아파트 1동, 2동, 3동, 5동, 6동, 7동	군산시 대학로 114-1 (금광동)	금광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전등급 B등급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 필요	전체동
유원아파트 2동, 4동, 5동	군산시 부곡길 39 (나운동)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전등급 B등급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 필요	5개동 중 3개동

군산시 공고 제2023-93호

군산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 역 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군 산 시	78 mm	120 mm	145 mm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遊水池)
-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군산시 공고 2023 - 198호

창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창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31.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창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예정지 : 군산시 창성동 16번지 일원

3. 사업 규모

- 면적 : 12,029m², 규모 : 토지 80필지, 건물 25동

4.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시행기간 : 2019. 1. 1. ~ 2023. 12. 31.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2023. 1. 31. ~ 2023. 2. 15. (공고한 날부터 15일)

나. 공람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

다. 의견서 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창성동	16	대	79.0	79.0	군산시					
2	창성동	17	대	154.8	154.8	군산시					
3	창성동	18	대	69.7	69.7	군산시					
4	창성동	19	대	159.0	159.0	군산시					
5	창성동	20	대	102.0	102.0	군산시					
6	창성동	21-1	대	94.5	94.5	군산시					
7	창성동	21-3	대	26.0	26.0	군산시					
8	창성동	22	대	159.0	137.5	군산시					
9	창성동	23-2	대	132.0	132.0	군산시					
10	창성동	24-3	대	113.0	113.0	군산시					
11	창성동	24-8	전	3,540	3,540	김복* 외 4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외		압류	
12	창성동	24-14	대	89.0	89.0	군산시					
13	창성동	24-15	대	159.0	159.0	군산시					
14	창성동	24-16	대	33.1	33.1	군산시					
15	창성동	24-17	도	82.0	82.0	김정*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산1-1 삼익파크맨션 502동 2층 3호	서울강동구		압류	
16	창성동	24-18	대	319.2	319.2	군산시					
17	창성동	24-19	대	37.0	37.0	군산시					
18	창성동	24-20	전	37.0	37.0	군산시					
19	창성동	24-21	대	80.0	80.0	군산시					
20	창성동	24-22	대	59.0	59.0	군산시					
21	창성동	24-23	대	123.0	123.0	군산시					
22	창성동	24-24	대	87.0	87.0	군산시					
23	창성동	24-25	대	168.0	168.0	군산시					
24	창성동	24-26	대	36.0	36.0	군산시					
25	창성동	24-27	대	6.0	6.0	군산시					
26	창성동	24-28	도	2.0	2.0	김정*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산1-1 삼익파크맨션 502동 2층 3호				
27	창성동	118	도	1,664.9	0.9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8	둔율동	180-1	대	461.1	461.1	군산시					
29	둔율동	181-1	대	153.2	153.2	군산시					
30	둔율동	182-1	대	197.6	197.6	군산시					
31	둔율동	182-3	대	18.0	18.0	안복*	군산시 둔율동 182				
32	둔율동	182-4	대	42.4	42.4	군산시					
33	둔율동	182-5	대	56.0	56.0	군산시					
34	둔율동	182-7	대	61.3	61.3	군산시					
35	둔율동	184-1	대	76.4	76.4	군산시					
36	둔율동	184-2	대	116.0	116.0	군산시					
37	둔율동	184-3	대	126.0	126.0	군산시					
38	둔율동	184-5	대	150.8	150.8	군산시					
39	둔율동	184-6	대	86.4	86.4	군산시					
40	둔율동	184-7	대	83.3	83.3	군산시					
41	둔율동	184-8	대	238.5	238.5	군산시					
42	둔율동	184-9	대	195.9	195.9	군산시					
43	둔율동	184-10	전	85.8	85.8	군산시					
44	둔율동	184-11	대	7.8	7.8	군산시					
45	둔율동	184-12	대	400.6	400.6	군산시					
46	둔율동	184-13	대	22.8	22.8	군산시					
47	둔율동	185-1	대	19.5	19.5	군산시					
48	둔율동	185-4	대	14.6	14.6	군산시					
49	둔율동	185-7	대	8.3	8.3	군산시					
50	둔율동	186-10	대	158.2	158.2	군산시					
51	둔율동	186-13	잡	237.8	237.8	군산시					
52	둔율동	186-15	대	176.2	176.2	군산시					
53	둔율동	186-16	대	141.4	141.4	군산시					
54	둔율동	186-17	대	130.1	130.1	군산시					
55	둔율동	186-18	대	155.3	155.3	군산시					
56	둔율동	186-19	대	97.5	97.5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57	둔율동	186-23	대	155.0	155.0	군산시					
58	둔율동	186-24	대	165.0	165.0	군산시					
59	둔율동	186-25	대	73.0	73.0	군산시					
60	둔율동	186-28	대	112.0	112.0	서석* 외 1인	익산군 함열읍 와리 226				군산시
61	둔율동	186-33	대	66.0	66.0	군산시					
62	둔율동	186-35	대	129.0	129.0	군산시					
63	둔율동	186-36	대	69.0	69.0	이중*	옥서면 옥봉리 324	국(군산세무서), 황성군, 국(원주세무서)		압류	
64	둔율동	186-37	대	183.0	183.0	서석*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2-7				
65	둔율동	186-38	대	88.0	88.0	군산시					
66	둔율동	186-39	대	13.0	13.0	군산시					
67	둔율동	186-43	대	3.0	3.0	군산시					
68	둔율동	186-44	대	30.0	30.0	군산시					
69	둔율동	186-47	대	33.0	33.0	서석*	군산시 둔율동 156				
70	둔율동	186-48	대	30.0	30.0	서석*	군산시 둔율동 156				
71	둔율동	186-49	대	13.0	13.0	서석*	군산시 둔율동 156				
72	둔율동	186-50	대	155.9	155.9	군산시					
73	둔율동	186-51	잡	73.0	73.0	군산시					
74	둔율동	186-52	잡	63.0	63.0	군산시					
75	둔율동	186-53	대	291.0	291.0	군산시					
76	둔율동	186-54	대	149.0	149.0	군산시					
77	둔율동	186-62	대	152.0	152.0	군산시					
78	둔율동	186-63	대	242.4	242.4	군산시					
79	둔율동	206-4	대	96.0	96.0	군산시					
80	둔율동	207	도로	397.2	0.2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창성동	16	가옥	조적, 슬라브	153㎡	군산시		
			창고	조적, 슬라브	12㎡			
			담장	블록(H=2.0m)	3.5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H=3.0m	3주			
			관상수		3주			
2	창성동	17	가옥	조적, 기와	97㎡	군산시		
			창고	조적, 스투트	13㎡			
			담장	블록(H=2.0m)	13m			
			대문	철재	1식			
3	창성동	24-8	가옥	블록, 스투트	217㎡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20㎡			
			대문		1식			
			관상수		3주			
4	둔율동	180-1	가옥	조적, 슬라브	176㎡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114㎡			
			담장	블록(H=1.5m)	12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H=4m	2주			
			관상수		3주			
5	둔율동	181-1	가옥	조적, 슬라브	107㎡	군산시		
			창고	조적, 스투트	28㎡			
6	둔율동	182-1	가옥	조적, 슬라브	145㎡	군산시		
			담장	블록(H=1.5m)	5.5m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7	둔율동	182-5	가옥	블록, 스투트	42㎡	군산시		
			웬스	H=1.5m	7m			
			고무나무	H=3.0m	3주			
8	둔율동	182-7	가옥	조적, 슬라브	55㎡	군산시		
9	둔율동	184-2	가옥(공가)	블록, 스투트	92㎡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28㎡			
10	둔율동	184-3	가옥	조적, 기와	104㎡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36㎡			
			담장	블록(H=2.0m)	15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H=4.0m	2주			
			소나무	H=3.0m	1주			
11	둔율동	184-6	가옥	블록, 기와	59㎡	군산시		
			창고	블록, 기와	22㎡			
			대문	철재	1식			
12	둔율동	184-7	가옥	블록, 기와	56㎡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21㎡			
			담장	블록(H=2.0m)	12m			
			대문	철재	1식			
13	둔율동	184-8	가옥	블록, 기와	82㎡	군산시		
			화장실	블록, 슬라브	6㎡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H=4.0m	2주			
			관상수	H=3.0m	1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4	둔율동	184-9	가옥	블록, 기와	87㎡	군산시		
			창고	블록, 기와	84㎡			
			담장	블록(H=2.0m)	5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H=4.0m	3주			
15	둔율동	184-1 2	가옥	블록, 슬라브	103㎡	군산시		
			담장	블록, 스투트	11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H=4.0m	1주			
			고무나무	H=3.0m	1주			
			관상수	다수	1식			
16	둔율동	186-1 0	대문	철재	1식	소유자불 명		
			웬스	H=2.0m	3.5m			
17	둔율동	186-1 5	가옥	조적, 기와	76㎡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28㎡			
			담장	블록(H=2.0m)	6m			
			대문	철재	1식			
18	둔율동	186-1 6	가옥	조적, 기와	83㎡	군산시		
			창고	조적, 스투트	11㎡			
			웬스	블록(H=1.0m)	7m			
			대문	철재	1식			
19	둔율동	186-1 7	가옥	조적, 슬라브	83㎡	군산시		
			담장	조적(H=1.5m)	12m			
			웬스	H=1.0m	7m			
			대문	철재	1식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20	둔율동	184-1 8	가옥	블록, 스투트	92㎡	군산시		
			담장	블록(H=1.5m)	9m			
			대문	목재	1식			
			감나무	H=3.0m	1주			
21	둔율동	184-1 9	가옥	조적, 스투트	78㎡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5㎡			
			담장	H=2.0m	3m			
22	둔율동	186-5 0	가옥	조적, 슬라브	93㎡	군산시		
			창고	조적, 슬라브	15㎡			
			웬스	H=1.0m	10m			
			대문	철재	1식			
23	둔율동	186-5 4	가옥	조적, 슬라브	91㎡	군산시		
			창고	조적, 슬라브	23㎡			
			담장	블록(H=2.0m)	7m			
			대문	철재	1식			
			관상수	H=3.0m	2주			
			장미	다수	1식			
24	둔율동	186-6 2	가옥	조적, 슬라브	112㎡	군산시		
			창고	조적, 슬라브	11㎡			
			담장	블록(H=2.0m)	2.5m			
			대문	철재	1식			
25	둔율동	186-6 3	가옥	블록, 스투트	111㎡	군산시		
			화장실	블록, 스투트	3㎡			
			담장	블록(H=2.0m)	25m			
			대문	철재	1식			
			관상수	H=3.0m	4주			

군산시 공시 제2023 - 21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군 산 시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명단 제공(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1매당 = 71원 - 100매 기준 = 7,100원 ○ 라벨용 명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용지 1매당 = 291원 - 100매 기준 : 2,91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학식디스크(C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원×광학식디스크 개수) + (26원×면수) 	

군산시 공고 2023 - 213호

송풍7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송풍7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송풍7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예정지 : 군산시 송풍동 937-5번지 일원

3. 사업 규모

- 면적 : 7,127.6㎡, 규모 : 토지 54필지, 건물 20동

4.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시행기간 : 2021. 1. 1. ~ 2024. 12. 31.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2023. 2. 1. ~ 2023. 2. 16. (공고한 날부터 15일)

나. 공람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

다. 의견서 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송풍동	937-5	전	76.0	76.0	김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6동 1101호				
2	송풍동	937-15	도	53.0	53.0	김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6동 1101호				
3	신평동	938-3	전	24.5	24.5	군산시					
4	송풍동	977-2	전	2,874.1	179.0	군산시					
5	송풍동	978-2	전	2,819.0	165.0	유상*외2인	군산시 송풍동 977				
6	신평동	987-10	전	133.7	60.0	군산시					
7	신평동	987-11	전	2088.8	2088.8	군산시					
8	신평동	987-12	대	334.5	334.5	나경*	군산시 신평안2길 27-1				
9	신평동	987-51	대	8.7	8.7	군산시					
10	신평동	987-53	대	49.0	49.0	군산시					
11	신평동	987-54	대	14.2	14.2	군산시					
12	신평동	987-55	대	132.0	132.0	군산시					협의 매수
13	신평동	987-56	대	118.0	118.0	군산시					협의 매수
14	신평동	987-77	대	205.0	205.0	군산시					협의 매수
15	신평동	987-78	대	241.0	241.0	군산시					협의 매수
16	신평동	987-80	대	238.8	238.8	군산시					
17	신평동	987-81	대	173.0	173.0	군산시					협의 매수
18	신평동	987-84	대	237.8	237.8	군산시					
19	신평동	987-85	대	17.0	17.0	군산시					협의 매수
20	신평동	987-86	대	97.0	97.0	군산시					협의 매수
21	신평동	987-87	대	111.7	111.7	군산시					협의 매수
22	신평동	987-88	대	65.7	65.7	군산시					협의 매수
23	신평동	987-89	대	71.3	71.3	군산시					협의 매수
24	신평동	987-90	대	112.9	112.9	군산시					협의 매수
25	신평동	987-117	대	34.2	34.2	군산시					
26	신평동	987-118	대	6.1	6.1	군산시					
27	신평동	987-119	대	3.9	3.9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28	신평동	987-120	대	131.6	131.6	군산시					
29	신평동	987-121	임	260.2	260.2	군산시					
30	신평동	938-1	대	2.1	2.1	군산시					
31	신평동	938-5	도	31.5	31.5	군산시					
32	신평동	939-3	대	39.7	39.7	군산시					
33	신평동	939-6	대	132.1	132.1	군산시					협의 매수
34	신평동	939-19	대	26.4	26.4	군산시					
35	신평동	939-20	대	29.9	29.9	군산시					
36	신평동	939-23	대	13.5	13.5	군산시					
37	신평동	939-24	대	28.2	28.2	군산시					
38	신평동	940	대	159.2	159.2	김지*	군산시 신평길 48				
39	신평동	987-57	대	11.0	11.0	군산시					협의 매수
40	신평동	987-79	대	83.0	83.0	군산시					협의 매수
41	신평동	987-82	대	69.4	69.4	군산시					
42	신평동	987-83	대	162.6	162.6	군산시					협의 매수
43	신평동	987-91	대	119.7	119.7	군산시					협의 매수
44	신평동	987-92	대	61.0	61.0	군산시					협의 매수
45	신평동	987-93	대	140.1	140.1	군산시					협의 매수
46	신평동	939-18	대	179.3	179.3	군산시					
47	신평동	939-4	전	43.3	43.3	군산시					
48	신평동	939-22	대	48.5	48.5	군산시					
49	신평동	939-21	대	90.8	90.8	군산시					
50	신평동	939-16	대	107.4	107.4	군산시					
51	신평동	938-13	도	141.1	141.1	군산시					
52	신평동	940-1	도	68.0	68.0	군산시					
53	신평동	987-8	대	8.7	8.7	군산시					
54	신평동	939-25	대	21.2	21.2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신평동	938-3	화장실	슬래브	19.2㎡	군산시		
			태양열판		1개			
2	신평동	987-90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 및 슬래브지붕	89.4㎡	군산시		협의 매수
			욕실 및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1.2㎡			
			창고	철과이프조 함석지붕	12.9㎡			
3	신평동	987-89	주택	조적조 슬래브및스 레트지붕	90.1㎡	군산시		협의 매수
			주택(2층)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29.2㎡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2.5㎡			
4	신평동	987-88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62.5㎡	군산시		협의 매수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 붕	49.2㎡			
			화장실 및 창고	목조 및 조적조 슬래브및함석지붕	6.6㎡			
			비닐하우스		16.8㎡			
			포장	콘크리트	7.6㎡			
			감나무		3.0주			
			목련나무		1.0주			
산딸나무		1.0주						
5	신평동	987-87	주택(1층)	조적조 슬래브지붕	54.4㎡	군산시		협의 매수
			주택(2층)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4.4㎡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0.4㎡			
			계단		1.0식			
6	신평동	987-86	주택	슬래브	98.2㎡	군산시		협의 매수
			창고	조립식	9.0㎡			
			감나무		6.0주			
			대추나무		4.0주			
			매실나무		1.0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7	신평동	987-85	주택	조적조 슬래브 및 칼라강판지붕	77.9㎡	군산시		협의 매수
			창고	목조 함석지붕	15.1㎡			
			계단		1.0㎡			
			감나무		4.0주			
			대추나무		1.0주			
			무화과		1.0주			
8	신평동	987-78	주택	조적조 슬래브 및 칼라강판지붕	70.2㎡	군산시		협의 매수
			욕실 및 화장실	조적조 슬래브지붕	4.1㎡			
			대문		1.0식			
			담장		3.0m			
			계단		1.0식			
			화단		1.0식			
			매실나무		2.0주			
			대추나무		1.0주			
9	신평동	987-77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 붕	76.7㎡	군산시		협의 매수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지 붕	26.9㎡			
			차양	철파이프썸라이트	12.0㎡			
			포장	콘크리트	31.0㎡			
			담장	H1.5x6.5	6.5m			
			대문	철제	1.0식			
			화단		1.0식			
			대추나무	R15	1.0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0	신평동	987-81	주택	조적조 슬레이트및함석지붕	82.9㎡	군산시		협의 매수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0㎡			
			담장	H1.5x13.1	13.1m			
			대문		1.0식			
			장독대		1.0식			
			바닥포장		12.0㎡			
			오동나무		1.0주			
11	신평동	987-55	주택	조적조 강판지붕	101.3㎡	군산시		협의 매수
			대문	철제	1.0식			
			포장	콘크리트	28.0㎡			
			담장		15.0m			
			대추나무		1.0주			
12	신평동	987-120	주택	슬레이트	36.0㎡	군산시		협의 매수
			주택	합석	58.2㎡			
			포장	콘크리트	15.2㎡			
			대문	목재	1.0식			
			화장실	슬레이트	1.0식			
			담장		4.0m			
			아카시아 나무		2.0주			
13	신평동	987-12	화장실	조립식	6.2㎡	나경*	군산시 신평안2길 27-1	
			주택	조적조 및 조립식판넬	113.5㎡			
			주택	조립식판넬	41.0㎡			
			태양광발전 설비		3.0KW			
			방	슬래브	8.7㎡			

포장	콘크리트	88.3㎡
대문	목재	1.0식
웬스		11.0m
수도간		1.0식
이전비	신불사	1.0식
석물		8.0식
화단		1.0식
철쭉		300.0주
엄나무		10.0주
감나무		20.0주
석류나무		10.0주
보리수		5.0주
자두나무		20.0주
매실나무		20.0주
황철나무		2.0주
회화나무		5.0주
가죽나무		5.0주
산초나무		5.0주
동백나무		10.0주
옷나무		10.0주
노나무		5.0주
별나무		5.0주
앵두나무		3.0주
오가피		10.0주
구기자		50.0주
치자나무		5.0주
대추나무		10.0주
목련		5.0주

			꽃단풍		5.0주			
			소나무		3.0주			
			복숭아나무		26.0주			
			무화과나무		1.0주			
			라일락나무		5.0주			
			블루베리나무		5.0주			
			수국		5.0주			
			굴나무		1.0주			
			배나무		2.0주			
			호두나무		5.0주			
			다래나무		2.0주			
			살구나무		5.0주			
			사과나무		5.0주			
			홍매화		1.0주			
			화살나무		1.0주			
			소사나무		2.0주			
			작약		5.0주			
			장미		1.0주			
			은목서		1.0주			
			목단		1.0주			
14	신평동	987-10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9.3㎡	나경*	군산시 신평안2길 27-1	
			담장	가설물	10.1㎡			
			가설울타리 및담장	14xH1.8	14.0m			
			대문		1.0식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5	신풍동	940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84.9㎡	김지*	군산시 신풍길 48	
			차양	아크릴(바닥포장포함)	2.0식			
			담장	H1.5x24.2	24.2m			
			대문		1.0식			
			계단		1.0식			
			다용도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0식			
			화장실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0식			
16	신풍동	939-6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110.0㎡	군산시		협의 매수
			담장	H1.5x3.0	3.0m			
			대문		1.0개			
			계단		1.0식			
			바닥포장		7.0㎡			
17	신풍동	987-93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110.5㎡	군산시		협의 매수
			담장	H1.5x13.1	13.1m			
			대문	철제	1.0개			
			포장	콘크리트	27.9㎡			
18	신풍동	987-92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52.1㎡	군산시		협의 매수
			주택 (2층부분)	조적조 슬래브지붕	40.0㎡			
			창고	조립식판넬	6.0㎡			
			계단		1.0식			
19	신풍동	987-57	주택	조적조 강판지붕	83.2㎡	군산시		협의 매수
			화장실	슬래브	11.3㎡			
			대문	철제	1.0개			
			계단		1.0식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20	신평동	987-83	주택	조적조강판	149.2㎡	군산시		협의 매수
			포장	콘크리트	38.6㎡			
			계단		1.0삭			
			담장		4.0m			
			사철나무		1.0주			
			감나무	R20	1.0주			

군산시 공고 제2023-221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1.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3. 1. 31.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3. 1. 31.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5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파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지역경제 활력파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수산식품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수산식품 정책과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어업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어업 진흥과
	군산시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아동 정책과
	군산시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여성가족 청소년과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4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폐 기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소상공인 지원과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수산 진흥과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폐 기	군산시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아동 청소년과
	군산시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여성 가족과